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립대학 인수 특례 신설 및 잔여재산 출연 대상 확대 〉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2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 신설 ..... | 3  |
| 2. 잔여재산 출연 대상 확대 .....       | 9  |
| [참고자료] .....                 | 1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6. 18.
3. 회 부 일 : 2026. 7.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

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 신설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지역사  
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  
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br>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br><u>&lt;신설&gt;</u> |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br>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br><u>제13조의2(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br/>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br/>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지역사<br/>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br/>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br/>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br/>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br/>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br/>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u> |

|  |                                                                                                                                                                                                                     |
|--|---------------------------------------------------------------------------------------------------------------------------------------------------------------------------------------------------------------------|
|  | <p><u>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사립대학 인수 및 설립·경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정책 수립 등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인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13조의2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통폐합되는 경우 입학정원 감소 등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인재양성 기반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고등교육 기반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sup>1)</sup>

1) 【참고자료1】 사립대학 통폐합 현황 참조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의 통폐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라 함)」상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 사립대학, 국립학교,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의미함.<sup>2)</sup>

□ 이러한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sup>3)</sup>

전담기관<sup>4)</sup>의 장은 (제8조)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 (제9조)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10조)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 사립대학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등이 포함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3) 【참고자료2】 현행법상 사립대학 통폐합 관련 규정 참조

4)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그리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지원하여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sup>5)</sup>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통폐합 절차를 이행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초래될 현저한 손실과 혼란 방지,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폐합 대상 학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을 통폐합하지 않고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운영을 유지하여 사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통폐합이 필요한 대학에 대하여 통폐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통폐합 대상 사립대학 인수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5)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로, 현행법에 규정된 사립대학의 통폐합 사유 중 ‘교육사업양도’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sup>6)</sup> 사립대학이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개정안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사업양도에 따른 사립대학 통폐합을 통해 개정안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유,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육사업양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사업양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현행법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대학·전문대학법인협의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인수는 타율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고 사학의 자율

6)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사업양도”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성 및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인수요건 및 절차 등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이 설치된 부실 사립대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경우 사실상 공공의대 도입과 동일한 효과로 작용하여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근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2. 잔여재산 출연 대상 확대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 법인에 의료법인과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법인 등을 추가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익적·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p> <p>①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 <p>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p> <p>① -----</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p> <p>4.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p> |

|                                  |                                                                                                 |
|----------------------------------|-------------------------------------------------------------------------------------------------|
| <p>3. (생략)</p> <p>② ~ ④ (생략)</p> | <p><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br/><u>법인에 대한 출연</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나. 검토의견

□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되나,<sup>7)</sup>

현행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해산하거나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폐교동의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거나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음.<sup>8)</sup>

### 7)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8)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의 귀속

- 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하는 대상으로 현행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출연 대상인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 개정안에서 추가하도록 명시한 의료법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sup>9)</sup>
- 각 법인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각 (공익법인)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의료법인)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며, 수익(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익(부대)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목적 달성 또는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수익(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주된 목적인 의료업 관련 사업 이외에도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 지원을 위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미용업 등이 폭넓게 인정됨.
- 또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관련하여,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우선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 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만 국고로 귀속됨.

9) 【참고자료3】 출연 대상 법인 비교 참조

##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

| 구분             | 학교법인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
| 근거             | 「사립학교법」 제35조                                                                                                                 |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제19조                                                                                                                                                                                              | 「공익법인법」 제13조                                                     | 「의료법」 제50조<br>* 「민법」 제80조 준용                                                                                                                |
| 잔여<br>재산<br>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정관으로 지정한 자(학교법인, 교육사업 경영자)</li> <li>• 학교법인 임원, 경영자 등의 시정요구 미이행시 : 국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출연 또는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출연</li> <li>- 국가: 위로금, 보상금 등 지급 후 해산정리금 (잔여재산의 15% 이내) 지급 가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정관으로 지정한 자</li> <li>•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 : 유사 목적으로 처분 가능</li> <li>• 위에 따라 처분되지 않는 경우 : 국가</li> </ul> |

□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여 출연 대상으로 의료법인과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법인이 추가될 경우,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사립대학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이 공익적 목적 이외의 수익(부대)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의료법인 이외에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법인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잔여재산 출연 대상 확대가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정을 위한 심사 당시 해산하는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출연 대상으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가 등의 지도·감독 등을 고려하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최종적으로 출연 대상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 또한 잔여재산의 출연 대상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할 내용을 포함한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6.8.15.부터 시행되어 출연 대상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법의 적용 경과를 고려하여 출연 대상 범위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 [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 법인 ]

| 구분             | 사학구조개선행법                                                          | 사학구조개선행법 시행령                                                                                                                         |
|----------------|-------------------------------------------------------------------|--------------------------------------------------------------------------------------------------------------------------------------|
| 공익<br>법인       | (제19조제1항제1호)<br>•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제14조제1항)<br>•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br>•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
| 사회<br>복지<br>법인 | (제19조제1항제2호)<br>•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제14조제2항)<br>•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br>•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br>•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b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 개정안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제1항제3호) 교육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의료법인은 일반대중 대상 의료 기관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정한 자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수준의 공익적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잔여재산이 특정 의료법인의 재산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립초중고·전문대학법인협의회는 의료법인만 추가하는 것은 다른 법인과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대학법인협의회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공익적 인프라에 환원되는 동시에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안 제19조제1항제4호) 교육부와 한국사립초중고·전문대학법인협회 등은 개정안은 출연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내용이 불분명하고 대상에 대한 판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189 |

## 참고 1

## 사립대학 통폐합 현황

(단위: 명)

| 구분   | 법 인 명<br>(대상교 소재지) | 학교명                                              | 입학 정원                                        |                     |
|------|--------------------|--------------------------------------------------|----------------------------------------------|---------------------|
|      |                    |                                                  | 통폐합 전                                        | 통폐합 후               |
| 2005 | 가천학원<br>(인천)       | <u>가천의대('06.3.1. 개교)</u><br>가천의과대학교 + 가천길대학(전)   | 2,028<br>(가천의대 60, 가천길대학 1,968)              | 827<br>(△1,201)     |
|      | 고려중앙학원<br>(서울 성북)  | <u>고려대('06.3.1. 개교)</u><br>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전)  | 4,761<br>(고려대 3,971, 병설보건대 790)              | 4,088<br>(△673)     |
|      | 삼육학원<br>(서울 노원)    | <u>삼육대('06.3.1. 개교)</u><br>삼육대학교 + 삼육의명대학(전)     | 1,960<br>(삼육대 780, 삼육의명대 1,180)              | 1,242<br>(△718)     |
|      | 동명문화학원<br>(부산 남구)  | <u>동명대('06.3.1. 개교)</u><br>동명정보대학교 + 동명대학(전)     | 4,296<br>(동명정보대 1,760, 동명대학 2,536)           | 2,240<br>(△2,056)   |
| 2006 | 경원학원<br>(경기)       | <u>경원대('07.3.1. 개교)</u><br>경원대학교 + 경원전문대학(전)     | 4,964<br>(경원대 2,020, 경원전문대 2,944)            | 3,157<br>(△1,807)   |
|      | 을지학원<br>(대전, 경기)   | <u>을지대('07.3.1. 개교)</u><br>을지의과대학교 + 서울보건대학(전)   | 2,683<br>(을지의대 187, 서울보건대 2,496)             | 1,184<br>(△1,499)   |
| 2008 | 우송학원<br>(대전)       | <u>우송대('09.3.1. 개교)</u><br>우송대학교 + 우송공업대학(전)     | 4,050<br>(우송대 1,650, 우송공업대 2,400)            | 2,197<br>(△1,853)   |
| 2011 | 가천경원학원<br>(경기)     | <u>가천대('12.3.1. 개교)</u><br>가천의과학대학교 + 경원대학교      | 3,984<br>(가천의과학대 827, 경원대학교 3,157)           | 3,984<br>(변동없음)     |
|      | 동원교육학원<br>(제주)     | <u>제주국제대('12.3.1. 개교)</u><br>탐라대학교 + 제주산업정보대학(전) | 1,880<br>(탐라대 266, 제주산업정보대 1,614)            | 800<br>(△1,080)     |
|      | 중앙대학교<br>(서울, 경기)  | <u>중앙대('12.3.1. 개교)</u><br>중앙대학교본교+분교+적십자간호대학(전) | 4,713<br>(본교 2,683, 분교 1,790,<br>적십자간호대 240) | 4,553<br>(△160)     |
|      | 경희학원<br>(서울, 경기)   | <u>경희대('12.3.1. 개교)</u><br>경희대 본교 + 분교           | 4,880<br>(본교 2,400, 분교 2,480)                | 4,860<br>(△20)      |
| 2012 | 경동대학교<br>(강원)      | <u>경동대('13.3.1. 개교)</u><br>경동대학교 + 동우대학(전)       | 3,060<br>(경동대 852, 동우대 2,208)                | 1,848<br>(△1,212)   |
|      | 동원육영회<br>(서울, 경기)  | <u>한국외대('14.3.1. 개교)</u><br>한국외국어대 본교 + 분교       | 3,398<br>(본교 1,676, 분교 1,722)                | 3,377<br>(△21)      |
| 2013 | 신흥학원<br>(경기)       | <u>신흥대('14.3.1. 개교)</u><br>한북대 + 신흥대(전)          | 2,802<br>(한북대 250, 신흥대 2,552)                | 1,453<br>(△1,349)   |
|      | 단국학원<br>(경기, 충남)   | <u>단국대('14.3.1. 개교)</u><br>단국대 본교 + 분교           | 5,030<br>(본교 2,380, 분교 2,650)                | 4,945<br>(△85)      |
| 2019 | 상지학원<br>(강원)       | <u>상지대('20.3.1. 개교)</u><br>상지대 + 상지영서대(전)        | 2,806<br>(상지대 1,707, 상지영서대 1,099)            | 2,255<br>(△551)     |
| 2023 | 원석학원<br>(경북 경주)    | <u>경주대('24.3.1. 개교)</u><br>경주대 + 서라벌대(전)         | 997<br>(경주대 762, , 서라벌대 235)                 | 890<br>(△107)       |
| 2025 | 원광학원<br>(전북 익산)    | <u>원광대('26.3.1. 개교)</u><br>원광대 + 원광보건대(전)        | 4,358<br>(원광대 3,047, 원광보건대 1,311)            | 3,950<br>(△408)     |
| 합 계  |                    | 37교 → 18교                                        | 62,650                                       | 47,850<br>(△14,800) |

주: 2005년 이후  
자료: 교육부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1항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영위기대학이 제12조제2항의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자산의 활용·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 학부·학과의 통폐합

3. 사립대학의 통폐합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참고 3

### 출연 대상 법인 비교

| 구분          | 현행법                                                                         |                                                                                                                                                     | 개정안 추가                                                                                                                                                                                                                                                                                  |
|-------------|-----------------------------------------------------------------------------|-----------------------------------------------------------------------------------------------------------------------------------------------------|-----------------------------------------------------------------------------------------------------------------------------------------------------------------------------------------------------------------------------------------------------------------------------------------|
|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 근거법         | • 공익법인법                                                                     | • 사회복지사업법                                                                                                                                           | • 의료법                                                                                                                                                                                                                                                                                   |
| 목적          | (제2조)<br>•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 (제2조제3호)<br>• 사회복지사업 수행                                                                                                                             | (제33조제2항제3호)<br>• 의료업 수행                                                                                                                                                                                                                                                                |
| 사업          | (제2조)<br>•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 (제2조제1호)<br>•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보호 · 선도 · 복지에 관한 사업<br>•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 사업<br>•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 지원 목적 사업 | (제3조제1항)<br>•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 · 조산의 업<br><br>* (제2조제1항)<br>•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 설립 허가자      | (제4조제1항)<br>• 주무관청                                                          | (제16조제1항)<br>• 시 · 도지사                                                                                                                              | (제48조제1항)<br>• 시 · 도지사                                                                                                                                                                                                                                                                  |
| 수익 (부대) 사업  | (제4조제3항)<br>•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 가능<br>• 주무관청 승인 필요                              | (제28조)<br>• 목적사업 경비 충당 위해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행 가능<br>• 수익사업 수익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br>• 수익사업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 처리                                 | (제49조)<br>•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 기관에서 부대사업 수행 가능<br>- 의료인, 의료관계자 양성 · 보수교육<br>- 의료, 의학 관련 조사 · 연구<br>-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설치 · 운영<br>-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 운영<br>-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편의 지원 사업<br>• 부대사업 임대 · 위탁 운영 가능<br>• 부대사업 수익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 계산<br>• 시 · 도지사 신고 필요 |
| 해산 법인 잔여 재산 | (제13조)<b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br>•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 (제27조)<b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br>•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사용<br>• 수익(특수관계자 제외)                                                      | (제50조) 「민법」 준용 : 「민법」 제80조<br>• 정관으로 지정한 자 귀속<br>•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 처분 가능<br>• 위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 귀속                                                                                                                                                               |